

# 서울특별시

## 닭고기 소비증대 대책

황 인 옥

<서울시축정계장>

인구증가, 소득증대, 식생활의 개선등으로 우리나라의 육류소비는 증가일로에 있고 특히 수도 서울은 인구의 도시집중 경향으로 몇년 동안에 인구가 급팽창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소득도 타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아 육류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인구, 소득 및 육류소비추세

구분 년도별	인구 (명)	시민소득 (원)	육류소비 량 %	비고
1965	3,470,880	39,020	33,856	① 육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육류합 계임
1966	3,805,261	49,241	35,679	
1967	3,969,261	70,426	36,896	
1968	4,334,973	94,944	41,795	② 1970년 시민소 득은비공식추계
1969	4,776,928	121,834	47,344	
1970	5,509,993	135,000	56,556	

육류라하면 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말하는 데 돼지고기 닭고기는 생산기간이 짧고 사육여건이 좋아서 수요공급에 별 차질이 없는것 같으나 쇠고기는 1964년도 부터 한우의 지속적인 감소로 시장출하가 적은 농경기(4~8월)에는 매년 공급이 부족하여 년례행사과 같이 쇠고기파동을 야기하고 이 파동은 단순히 쇠고기파동으로 그치지 않고 타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의 저물가 시책구현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농림부는 매년 육류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한우의 증식을 기도하고 있으나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쇠고기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비육우 단지조성, 유통체제 개선(식육도매시장개설) 등급판매제 실시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보았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여 급년부터는 부족한 쇠고기(수요의 20%)는 값이 싸고 생산이 용이한 닭고기로 대체키로 방침을 세우고 집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기본조사실시

서울시에서 본 방침을 결정하기까지 부족한 쇠고기를 닭고기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근 1년간에 걸쳐 검토한 내용은 1) 년도별 육류별 수요추정, 2) 생산공급전망, 3) 시민의 기호성, 4) 육류별 가격대 소비탄력성, 5) 주부를 상대로한 닭고기 대체가능도 조사, 6) 닭고기의 유통현황과 개선방안이며 이들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한 결과 쇠고기 수요량 20%는 닭고기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시책적으로 닭고기 소비증대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소비자 의견

소비자(주로 주부상대) 의견을 종합하면

○닭고기는 일정한 시장에 나가야만 살수 있어 불편하고,

○시장에서 비위생적 처리를 하고 있어 사먹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고,

○기호성도 년중을 통하여는 쇠고기가 가장 많고 다음이 닭고기이지만 여름철에는 닭고기가 좋다는 의견이었으며,

○가격면에서 600g당 쇠고기 500원, 돼지고기 300원, 닭고기 250원이면 닭고기를 먹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판매제도에 있어서 닭고기도 쇠고기, 돼지고기와 같이 주박가에서도 편리하게 사먹을 수 있게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할것을 요망하고 있으며,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도록 위생적인 처리와 검사품 시판을 요구하고 있었다.

### 식육점 닭고기 판매권장

이상과같은 소비자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시책적으로 5월1일부터 전 식육점에서 닭고기 판매를 적극 권장하여 5월말 현재 330여개소에서 판매하고 있다. 1개 식육점에서 1일 10수씩만 판매한다면(시내식육판매업소수 1,400여개소) 14,000kg의 고기가 닭고기로 대체

되며 이것은 서울시 쇠고기 수요량의 25%에 해당하고, 쇠고기 약 100두분이며 년간 한우 36,000두는 절약된다는 이론이다.

물론 전량이 쇠고기 대체로 볼 수 없을것이기 때문에 20%는 쇠고기, 5%는 돼지고기 대체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위생적 처리**

닭고기가 아무리 값이 싸고 영양가가 높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처리되는 비위생적인 닭고기를 식육점에서 팔고 시민들에게 많이 먹으라고 권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검사표시가 없는것은 전열판매할 수 없음)

그러므로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도록 식육판매업소에 공급되는 닭고기는 전량 가금등 의뢰검사 규칙에 의한 위생검사를 필하도록 조치하였다.

**가금등의뢰검사 규칙개정**

위생검사를 맡으려면 검사수수료를 수당 2원씩 징수토록 되어있어 수수료 금액의 과다로 도제처리업자들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서울시에서는 위생적인 처리를 장려하고 전 수수 검사를 권장하기 위하여 검사수수료를 대폭인하하도록 검사규칙 개정을 농림부에 건의한 바 71. 5. 6일자로 검사수수료는 서울특별시및 도지사 결정고시하여 징수토록 개정공포되었고 서울시에서는 5월19일자로 검사수수료를 대폭인하하여 수당 20원(50수당 10원)으로 결정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업자에게 협조요망사항**

서울시의 닭고기 유통개선대책및 식육판매업소 닭고기 판매권장에 대하여 각계에서 찬성도 많이 하지만 일부 생산자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서울시 행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다. 즉 위생적처리및 식육검사품 판매 등이 시기적으로 빠르며 강행한다면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닭고기의 유통개선문제 특히 위생처리 문제가 급년도에 새삼스럽게 대두된 문제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논의되었고 시장내에서 생닭 거래및 비위생적 도제 처리는 공중위생상이나 환경위생상 해롭다는 여론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었고 닭고기 소비증대에도 압적 존재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는 1969년부터 위생적 처리및 판매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업자들에게 계몽, 촉구하였으며 업자 스스로가 개선할 것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별로 개선된바가 없고 소비증대를 위하여 전 식육점에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권장하고 시민 보건위생을 위하여 7월까지의는 계몽하고 8월부터는

시장내 도제처리 행위를 금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앞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도제는 시설검사를 필한 도제장을 활용하거나, 자가 도제 판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상위해가 없는 외곽지대에 위생적인 시설을 완비하여 도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건당국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닭고기가 거의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일부 악덕업자는 “물주사” “염색”등을 하여 판매하고 있어 시민보건 위생에 위협을 주고 있으므로 앞으로 식육판매업소는 물론 관허 요식업까지 위생검사를 필한 닭고기만을 판매하도록 한다는 것이니 여러생산자들은 서울시의 시책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참 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38호

서울특별시 가금 등 의뢰검사 수수료 제정

농림부령 제452호(71. 5. 6공고) 가금등 의뢰검사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가금등 의뢰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 합니다.

1971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가금등 의뢰 검사 수수료**

구분	단위	수수료	비 고
닭	50수	10원	1. 닭, 오리에 있어서 50수 이하는 10원의 검사수수료를 징수
오리	50	10	
거위	5	10	2. 거위, 칠면조및 토끼에 있어서 5수이하는 10원의 검사수수료를 징수
칠면조	5	10	
토끼	5	10	
개	1두	10	

2. 검사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한 수수료는 의뢰검사를 취소 하더라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수수료 징수 개시일자**

71년 5월 19일

□□

**위생적인 닭고기를  
싼값으로  
식육점에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닭고기를 많이 먹읍시다.**

한국가금협회